

의안번호	2214282
의 퇴 인	정혜경의원
회 답 일	2026. 4. 7.
추계번호	25B6132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추가재정 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2억 8,000만원(연평균 5,600만원)으로 추계됨
-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표 1]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 2027~2031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평균
환경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안 제49조의2)	56	56	56	56	56	280	56

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 및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위원회의 위원 수, 회의 개최 횟수 및 회의참석 사례금액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9조의2(환경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신설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제1항) 1.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기준 및 판단에 관한 사항 2. 제31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제52조의3제2항의 신속평가 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4. 제52조의4제1항의 심층평가 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5. 제52조의6제1항의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토의에 부치는 사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	안 제49조의6(분야별 전문위원회) 신설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학계, 시민단체, 그 밖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3	안 제52조의5(심층평가에 대한 합동현지조사) 신설	위원회는 협의기관의 장에게 환경영향평가등을 검토함에 있어서 평가대상이 심층평가 대상인 경우에는 전문검토기관, 지역주민, 민간단체, 관계전문가, 승인기관, 사업자, 환경영향평가업자 등과 함께 사업지역에 대한 합동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4	안 제52조의6(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운영 등) 신설	위원회는 심층평가 대상으로서 심각한 환경갈등이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이하 이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5	안 제52조의7(전문가 자문 등) 신설	위원회는 심층평가 대상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음(제1항) 위원회는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자문단은 환경, 도시계획, 토목·건축, 자연·생태, 조경, 화공, 산림자원, 해양환경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와 시민단체와 해당지역 사회·경제 분야 전문가, 환경영향평가사 등을 포함하여 100명 내외로 위촉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49조의2(환경영향평가 위원회의 설치)	○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 등을 참고하여 추계
2	안 제49조의6(분야별 전문위원회)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개정안에 따라 학계·시민단체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위원 수당 지급 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방식과 전문위원의 수·임기 등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합리적인 비용추계에는 한계가 있음
3	안 제52조의5(심층평가에 대한 합동현지조사)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개정안에 따라 협의기관의 장이 심층평가 대상에 대해 전문검토기관, 지역주민, 민간단체, 관계전문가, 승인기관, 사업자, 환경영향평가업자 등과 합동현지조사를 실시할 경우 현지조사 비용 등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해당 소요는 향후 합동현지조사의 수요와 방법, 참여 인원의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현시점에서 합리적인 추계에는 한계가 있음
4	안 제52조의6(환경영향갈등 조정협의회의 구성·운영 등)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개정안에 따라 위원회가 심층평가 대상 중 심각한 환경갈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환경영향갈등조정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때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해당 소요는 향후 발생할 환경갈등의 규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 현시점에서는 합리적인 추계에 한계가 있음
5	안 제52조의7(전문가 자문 등)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개정안에 따라 위원회가 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심층평가 대상에 대한 자문을 받을 경우 자문료 지급 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향후 구성될 자문단의 규모와 자문 수요 등을 특정하기 곤란하므로 현시점에서는 합리적인 추계에 한계가 있음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환경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안 제49조의2)

-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기준 및 판단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회의참석 사례금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위원 수) 개정안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위원회의 위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총 20명의 민간 위원(위원장 1명, 위원 19명)으로 구성
- (회의개최 횟수) 회의개최 횟수는 유사사례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회의 개최 횟수(2025년 기준 14회 개최)를 준용하여 연 14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함

[표 2]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와 환경영향평가위원회 심의사항 비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현행 법 제8조)	환경영향평가위원회(안 제49조의2)
·제11조와 제24조에 따른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기준 및 판단에 관한 사항
·제31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조정 에 관한 사항	·제31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조정 에 관한 사항
·제51조제2항에 따른 약식절차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	·제52조의3제2항의 신속평가 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제52조제3항에 따른 의견 수렴 내용과 협의 내용의 조 정에 관한 사항	·제52조의4제1항의 심층평가 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심층평가 대상 제52조의3제 2항에 따른 신속평가 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제52조의6제1항의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운 영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원활한 환경영향평가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토의에 부치는 사항

- **(회의참석 사례금)** 안건 검토비 등을 포함한 회의참석 사례금은 1회 회의 개최 시 1인당 20만원(참석수당 20만원¹⁾)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함
 - 이때, 회의참석 사례금은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추계 결과)** 개정안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2억 8,000만원(연평균 5,600만원)으로 추계됨

[표 3] 환경영향평가위원회 구성에 따른 비용추계: 2027~2031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평균
민간위원 수(A, 명)	20	20	20	20	20	-	-
회의개최 횟수(B, 회)	14	14	14	14	14	-	-
회의참석 사례금(C, 만원/명·회)	20	20	20	20	20	-	-
추가재정소요(D=A×B×C, 백만원)	56	56	56	56	56	280	56

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 및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위원회의 위원 수, 회의 개최 횟수 및 회의참석 사례금액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 및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위원회의 위원 수, 회의 개최 횟수 및 회의참석 사례금액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1)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건 검토비는 일반수용비에 편성하며,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200,000원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100,000원내에서 집행(기획예산처,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26. 1. p.150.)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장우윤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우윤	02-6788-3735	jangwy93@nabo.go.kr